



이 자료는 지난 11월 27일 재정경제부에 제출한 자료를 요약·정리한 것임

-편집자 주-

유사 휘발유에 대한 과세 규정 명문화 건의

-대한석유협회-

최근 알코올 연료 등 휘발유 유사연료가 출현하고 있어, 이에 대한 관련법규의 제도적 정비가 시급한 실정임. 만일, 이 같은 유사 휘발유가 과세되지 않고 유통될 경우 경쟁연료간 세제 불균형으로 석유 수급 혼란등이 우려될 뿐 아니라, 유사 휘발유 사용 확대에 따라 급격한 세수 감소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 됨.

이에 우리 업계는 교통세법 등 관련 세법 개정을 통한 유사 휘발유에 대한 과세 규정의 명문화를 다음과 같이 건의 드리는 바임.

1. 유사휘발유에 대한 과세규정 명문화 필요성

최근 알코올과 솔벤트 등의 석유화학화합물을 혼합한 휘발유 유사 연료가 출현하고 있음.

이들 휘발유 유사연료의 경우 휘발유와

30~40%까지 혼합하여 휘발유 내연기관에 사용 가능하도록 첨가제 등으로 관련 정부기관의 품질 승인을 받고 있음.

이와 같은 휘발유 유사연료는 첨가제, 조연제 등으로 휘발유에 혼합 사용 가능하도록 품질 승인을 받아 유통될 수 있으므로 “휘발유와 유사한 대체연료”에 포함시켜 그 제조단계에서부터 과세되도록 하여야 할 것임.

만약 품질승인 받은 이와 같은 휘발유 유사연료가 과세되지 않고 유통될 경우 동일한 시장에서 경쟁하는 연료간 세제 형평성 문제가 대두될 뿐 아니라, 전반적인 석유류 수급 및 유통상의 혼란도 우려됨.

또한 일반 소비자의 유사 휘발유 사용이 급격하게 확산될 위험성이 매우 크며, 이로 인해 정부의 세원 중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휘발유 세수의 감소를 초래하게 되어 정부차원의 대책마련도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2. 개정 건의안

상기와 같은 사유로 현행 교통세/특소세법 시행령상의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과세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주실 것을 건의함.

현행	건의안
<p>(교통세법 시행령) 제3조 (과세물품의 세목) 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물품의 세목은 다음과 같다.</p> <p>1.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p> <p>가. 휘발유</p> <p>나. <u>휘발유와 유사한 대체유류(석유사업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유사 석유제품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u></p>	<p>나. <u>휘발유와 유사한 대체유류</u></p> <p>① <u>석유사업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유사석유제품에 해당하는 것<개정></u></p> <p>② <u>휘발유 이외의 석유제품이나 석유화학제품을 그대로 또는 휘발유에 혼합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와 동법시행령 제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기계 및 차량의 연료(휘발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로 판매하는 경우에 당해 석유제품이나 석유화학제품<신설></u></p>

※ 특소세법시행령 [별표 1의 7. 법 제1조제2항 제4호 해당물품]의 “휘발유와 유사한 대체유류(석유사업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유사석유제품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와 관련임.